

1992년 3월 9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 일시: 1992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1분 개의

○ 발언자:

- 이토 히데코(伊東秀子)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정부위원(외무성 조약국장, 외무사무차관, 주미대사,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등)
- 와타나베 미치오(渡辺美智雄) 국무대신(세무사, 정치가, 중의원 의원, 대장성·농림수산성·후생성 장관, 부총리)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261X01519920309&spkNum=49¤t=46>

○ 해제(개요 및 특징)

이토 의원은 **위안부**였던 사람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인격권이나 인간존엄성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자료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정부를 향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함. 그러나 야나이 정부위원과 와타나베 대신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이전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이토 의원은 조약법에 관한 조약의 ‘착오’로 인한 무효 법리를 제시하면서 1965년 조약에 **위안부** 문제는 해당하지 않는지 추궁함. 나아가 일본이 경제대국의 지위를 갖고 있으나, 한국인의 일본관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해 정치적·외교적으로 적극적인 조치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충고함. 이와 함께 일본정부의 안이한 문제인식과 조사 실적을 질타함.

○ 주요 내용 번역

▷ 이토 위원 “사회당·호헌공동의 이토 히데코입니다.

먼저 외무성에 묻고 싶습니다.

종군위안부의 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3일 우리 당 야마하나 의원이 종군위안부 보상문제에 관한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그 귀추를 지켜본다’, ‘굳이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문제도 포함하여 법적으로는 1965년 일한 정상화 당시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청구란, 개인이 일본정부에 대해 민족적 박해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인간의 존엄을 모독당했다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답변인데, 맞습니

까?”

- ▷ **야나이 정부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기회를 통해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65년 「일한청구권·경제협력협정」 제2조에서 재산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제2조 이하의 규정에 이른바 국내법적 근거가 있는 실체적 권리에 관해서는 상대국에서 이를 소멸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기타 청구에 관해서도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 및 한국 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법률을 당시 제정하여 이를 소멸시켰습니다. 그 이외의 청구에 관한 일한간의 문제로는 이른바 외교적으로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즉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략)

- ▷ **이토 위원** “위자료 청구권은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까지 반복해온 그녀들의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완전히 반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방장관, 어떻습니까.”

(중략)

- ▷ **가토 국무대신** “조약국장이 답변한 대로입니다.”

- ▷ **이토 위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됩니다. 소권(訴權)이 있는 것은 당연히, 누구라도 재판소에 호소할 권리는 있으므로, 소권과 그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실체법상 권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재판소에 소(訴)를 제기할 권리란 절차법상 인정되는 소권입니다. 지금 조약국장이 답변한 것은 **중군위안부**였던 분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고 이는 해결의 틀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소권에 관한 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절차법상 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권리만 있고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멸된 것이 되는지 완전히 논리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관방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위자료 청구권을 당사자의 승낙 없이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조약국장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그럼 어째서 정부는 해결됐다고 하는지 이 점을 다시 한번 명쾌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야나이 정부위원** “관방장관께 하신 질문이 아무래도 저의 답변 때문인 것 같으니, 한 가지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정상 외교보호권을 포기했고, 관계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지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소송에 포함된 위자료 등의 청구가 우리나라의 법률에 비추어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충합니다.”

(중략)

- ▷ 야나이 정부위원 “(전략)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가 관여했는가 하는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어느 쪽이라고 해도, 이 일한의 협정상으로는 한국 국민의 우리 정부에 대한 청구 혹은 재산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청구도 물론입니다만, 양국 국민 간 청구의 문제 혹은 재산권 문제도 포함하여 이 조약상의 처리 대상입니다.”

(중략)

- ▷ 이토 위원 “(전략) 이번 종군위안부 문제에서는 일한 간 매우 중요한, 외교 차원의 것인가는 별도로 묻겠습니다만, 국민감정의 문제로서 이는 이제 어찌할 도리 없는 상황에 와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얼마 전 신문 보도에 따르더라도, 3월 1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의 한 신문이 한국인의 일본관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일본인에게 호감이 없다는 67.4%, ‘일본’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다가 26.1%, 일본정부는 남북통일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고 79%로 나왔듯이 반일 감정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커다란 원인으로서 종군위안부, 자기 민족이 이토록 능욕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 크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간의 이런 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략)

- ▷ 이토 위원 “대단히 적극적인 답변이라 저로서는 기쁩니다만, 지금 답변으로 여쭙어본다면, 요컨대 누가 위안부였는가에 관한 조사랄까 진상규명은, 누가 위안부였다. 즉 지금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지금한다는 것인데요. 군이 적극적으로 게다가 조직적·계획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저는 지난번에 밝혔습니다만, 지금은 하지만 지금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싶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 와타나베 국무대신 “저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념사업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전몰자(戰沒者) 등에게 충령비(忠靈碑)를 세우기도 하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보겠지만, 대체 어느 정도 인원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3명이나 5명에 관한 해결이라면 이야기는 간단하겠지요. 그러나 먼저 실태가 파악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관해서는 저쪽에서도 진상을 잘 규명하고 조사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듯하고, 저희 쪽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우호국 사이의 문제이므로 잘

의논해가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 **이토 위원** “실태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미야자와 총리도 성실한 조사를 한국에 약속해온 사정도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일조교섭에 출석해 오신 제6회 교섭의 나카히라(中平) 대표의 발언 가운데 매우 걱정되는 것이 있네요. **중군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와 놀라고 있다, 조선이 지적한 죄행(罪行)의 진상이 해명되는 데는 몇 세기가 걸릴지 모른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몇 세기가 걸릴지 알 수 없는 조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매우 문제이고,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실태가 해명된다면, 형태는 어찌 됐든 지급할 생각이 있음을 전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급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세기가 걸려도 어쨌든 여기저기 조사해보자는 것이라면, 국제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외교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략)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중군위안부**였습니다 라고 이름을 밝히며 받는 측도 대단히 수치스럽습니다. 지금 돈을 바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이 관여하지 않고 민간인이 멋대로 한 것이라고 잘라 말한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굴욕과 오욕으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은 뭔가 하는, 전후 50년이 지난 그녀들의 인간으로서의 분노와 증오가 분출된 것이 지금의 소송이고, 일본정부에 대한 청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누구에게 지급할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이런 사실이 **중군위안부**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대해 행해졌다면, 기금으로 할 것인지 혹은 기념비를 세울 것인지, 역사박물관을 세울 것인지 혹은 그런 사람들의 생활 보장, 이름을 밝히고 나온 사람들에게 개연성이 증명된다면 생활을 원조하자고, 어떤 형식을 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저는,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 ▷ **와타나베 국무대신** “(전략) **중군위안부** 문제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이는 생존해 있어도 혹은 유족으로서 어림쫓이 알고 있다고 해도 좀처럼 말하기 힘든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포함하여 무언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무엇이 좋을지, 그것은 향후 생각해나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하므로, 대략적인 것을 알면 정치적인 배려를 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은가 하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내각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어서 좀 과언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앞으로 잘 의논해보고자 합니다.”

(중략)

- ▷ **이토 위원** “(전략) 조사 문제로 한 번 더 돌아가자면, 성실한 조사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라면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조사는 실로 불성실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어떤 조사를 해왔는지 질문드렸더니, 1990년 6월에 이틀간에 걸쳐 후생성 근로국에서 근무한 사람 5명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같은 해에 2~3일에 걸쳐 9만 명의 강제연행자 명부를 대조했다. 그러나 **중군위안부** 같은 사람은 없었다거나, 그래서 재판이 열리고 작년 12월 12일에 지자체를 조사했다거나, 6개 성청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한국분들도 포함하든, 한국에 나가볼 정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